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Penalty Regulations on Possession and Viewing of the Illegal Filming

- Focusing on Article 14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

박현정**

Park, Hyun-Jeong

《 목 차 》

I. 서론

II. 불법촬영물 처벌에 관한 현주소

III. 외국의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에 관한 규정과 비교

IV. 신설규정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V. 결론

┃ 투고일자: 2020년 11월 10일 ┃ 심사일자: 2020년 11월 24일 ┃ 게재확정: 2020년 11월 25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3135)

** 조선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국 문 초 록]

성범죄에 관한 불법촬영물의 경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다. 더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온라인상에서의 생성과 유포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 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러한 ‘n번방’으로 알려진 사건을 중심으로 기존의 성착취영상물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처벌규정과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강화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암수범죄가 많고 유형이 다양하며 제재의 대상 및 범위의 구분이 외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관한 세분화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범죄에 관한 불법촬영·무분별한 유포, 이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지·시청에 관한 공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제재 규정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에 관한 불법촬영과 관련된 영역의 근절을 위한 방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소지, 불법촬영물 시청, 불법유포.

I. 서 론

정보통신의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고 인터넷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는 요즘,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보기술에 대한 손쉬운 접근’·‘전문적인 지식 자료의 공유’·‘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생활의 편리’와 같은 사이버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테러’·‘ 명예훼손’·‘사이버 폭력’과 같은 디지털 범죄 또한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現) 실정이다.

그 중,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는 물리적 공간의 시·공간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상의 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비동의(非同意) 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렇게 몰인식 현상이 만연하기까지, 처벌의 규정과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본고에서 논의하게 될 성범죄에 관한 불법촬영물 유포(流布)·소지(所持)·시청(視聽)은, 인터넷 활용의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러 범죄사건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 보호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다양한 용어의 혼용, 위험성에 따른 범위, 대상의 기준, 각 사안의 공범성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재의 기준과 그 처벌의 수위가 국민의 법감정(法感情)에 맞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양형(量刑)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위험성에 대한 핵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성·익명성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유포 및 그 소지와 시청에 있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강력히 처벌해야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가운데, 당사자 비동의(非同意) 촬영이나 보복성 음란물(Revenge Porno, 이하 리벤지 포르노)과 같은 특정 소수인 대상의 성범죄 불법 촬영, 유포 및 그 소지와 시청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형법상의 공범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불법촬영물 소지(所持)와 시청(視聽)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신설된 현행법 처벌규정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불법촬영물 처벌에 관한 현주소

현(現) 불법촬영물 범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그 범위를, 카메라 등 기기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불특정 소수 등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거나, 특정 소수인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형태까지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따른 범죄에 관한 용어들은 ‘도둑 촬영(이하, 도촬)’, ‘몰래카메라’, ‘비동의(非同意) 촬영’,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명확한 구별 없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에 앞서,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유형별 대상과 용어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위험요소와 그 유형 및 대상이 다양함에 따라, 그 피해의 대상에 따른 분류 기준, 피해의 위험성에 따른 구분, 촬영 당사자 간의 관계와 보복 가능성의 위험에 따른 각기 범주의 기준을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불법촬영물에 관한 가해자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또 다른 분류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용어와 그 의미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정된 후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개념의 총괄

불법촬영에 대해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후, 약칭 「성폭력처벌법」으로 표기)」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그 제재의 기준을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상의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의 범위·위험성의 기준·불법성의 범주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연구의 대상범위가 같거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를 ‘도촬’¹⁾, ‘비동의 성적촬영물’²⁾, ‘리벤지 포르노’³⁾, ‘몰래카메라’⁴⁾ 등으로

1) 도촬행위에 관하여 배상균 박사는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이며, 일본에서의 도촬행위에 대한 인식은 촬영대상자 혹은 대상물의 관리자에게 양해를 얻지 않고 숨어서 촬영하는 것, 몰래 촬영 내지 훔쳐 찍는 행위를 일

각 연구의 유형에 따라 개념을 달리 정리하고 있다. 이에 연구 대상 범위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실무상 제재 대상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법촬영·유포와 소지·시청의 처벌 규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필요적 공범으로서 피해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제재의 기준이 논의되어야 한다. 형사제재는 대부분 범죄자 중심으로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게 현(現) 법률상의 실정이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는 이와 달라야 한다는 게 본 연구자의 의견이다.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의 직접피해인 1차적 피해 이외에, 온라인상의 특징인 빠른 전파성 및 유포로 인해 인격권 침해와 신체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명예훼손 등에 대한 2차적 피해, 사회적인 비난 등과 삭제의 어려움에 따른 3차적 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므로 피해자를 고려한 제재규정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컨는다고 해석하고 있다.(新村出(編), 「広辞苑(第六版)」, 岩波書店, 2008年, 1973頁;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202면 인용). 위 연구자는 이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촬영대상자 또는 촬영대상물 관리자의 양해를 얻지 않은 것과 촬영행위가 핵심요소가 도촬행위 연구의 핵심요소라 하고 있다.(배상균, 앞의 논문, 201-202면).
- 2) 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에 관하여 이은영 박사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한 온라인에 유포행위를 기준으로 ‘리벤지 포르노’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특정·소수인, 교제 내지 친밀한 관계인의 비동의 성적 촬영물을 지칭하고 있다.(이은영,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167-168면.
 - 3) 리벤지 포르노는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폰, 소형카메라 등의 보급으로 교제당시에 동의에 의해 촬영하였거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내지 사진 등을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혁,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16집 제2호, 2016, 106면;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사전예방으로써 ‘클리어법’ 도입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106면).
 - 4) 몰래카메라에 관하여 안영규 교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을 빌어,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또는 그런 방식’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일반사람들에게 알려진 방송사의 잠입취재활동 내지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단어 활용이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여 불법촬영 및 범죄와 관련하여 몰카범죄 행위의 용어를 ‘불법성’을 강조한 ‘불법촬영’이라는 용어 사용을 사전적 관점이 아닌 형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입법적 제언에 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안영규, “불법촬영 관련 입법적 제언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9, 59면).

2. 불법촬영물 대상에 따른 범위 설정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용어가 혼용된 불법촬영물에 관해 그 불법의 기준과 피해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 불법의 기준에 따른 분류

불법촬영물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체로 성(性)과 관련된 영상물이나 신체의 촬영으로 분류되고 있다. 불법촬영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촬영의 노출정도가—신체일부의 촬영이든, 비동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물이든— 피해자의 육체적·심리적 고통과 2·3차에 잇따른 피해의 정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본 항에서는 불법의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의 위험성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1) 촬영자체의 불법

이른바 ‘불법촬영물’이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행위를 ‘촬영자체의 불법’이라 한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1항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하는 행위를 규정, 2항은 불법촬영 외에 촬영자체는 불법하지 않으나,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1항과 2항의 규정을 토대로, 현(現)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리벤지 포르노 사건을 적용해 보면 ‘촬영자체의 불법’이란, ‘연인 사이의 성생활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는 경우’, 그리고 ‘실령 동의에 의해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소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은 촬영자체의 불법성과 유포에 관한 불법성으로 불법 인정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불법기준과 인정시기의 판단에 따라 대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불법촬영과 유포의 불법에 따른 이중의 불법성이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유포의 불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촬영

최근 ‘n번방’으로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성착취영상물 촬영·유포에 대한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처벌 규정인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제재 및 소지·시청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촬영과 관계된 제재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피해대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듯 불법행위에 대한 촬영은 성착취에 따른 불법행위 외, 불법촬영물의 유포·시청 및 소지의 불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중의 불법성을 갖는다.

현행 규정은 촬영자체의 불법이든, 불법행위에 대한 촬영이든, 불법촬영물이라는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달리, 제재에 관해서는 양형(量刑) 문제에서 사안별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안별로 양형의 문제를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왕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법성 유형에 대한 세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본 연구자의 논의점이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촬영·유포와 소지·시청에는 공범에 의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4항이 1·2항과 더불어 해석된다는 측면에서, 불법촬영물 수요자의 역할은 이를 공급하는 자와 동일하게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불법촬영물의 수요자 또한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의 유형으로 놓고, 상이한 법정형의 규정⁵⁾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촬영대상(피해) 범위에 따른 분류

본 항에서는 불법촬영물의 피해 대상을 「성폭력처벌법」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5) 범죄성립 상 2인 이상이 상호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하여 동일목표를 지향하는 범죄형태로서 대항자 쌍방에서 상이한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라 할 수 있다(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제10판」, 박영사, 2019, 448면; 김혜정·박미숙·안경옥·원혜욱·이인영, 「형법총론 제3판」, 정독, 2020, 325면; 이상돈, 「형법강론」, 박영사, 2015, 509면; 배중대, 「형법총론 제11판」, 홍문사, 2013, 562면).

대상분류	주요장소와 유형에 따른 예	대표사건
불특정 다수인	• 공공장소 등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 지하철 몰카 ⁶⁾
불특정 소수인	• 드론 등을 이용한 고층아파트 내지 지정 영역에서의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 드론이용 몰카 ⁷⁾
특정 다수인	• 회사 내지 학교 등, 공공장소가 아닌 관련자 출입 영역에서의 불법촬영	•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 몰카 ⁸⁾
특정 소수인	• 연인 간에 동의 내지 비동의에 의해 촬영되는 경우, 영상물 소지·유포 • 성착취영상물 촬영·유포, 소지·시청	• 리벤지 포르노 ⁹⁾ • n번방 사건 ¹⁰⁾

- 6) 최근 지하철 여성의 하체 등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모 방송국의 전 앵커 김OO 사건을 비롯하여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치맛속 몰카’ 2020.08.21.기사, <www.fnnews.com> 2020.10.10 검색)
- 7) 최근 부산에서 드론을 이용해 아파트의 내부를 촬영하여 사생활을 몰래 찍는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드론의 추락으로 범인을 검거하였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적발이 어렵고 단속 규정이 명확치 않아, 불특정·소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생활 뿐 아니라 부산의 드론 사건과 같이 성관계 영상물 촬영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일보, “아파트 노리는 ‘드론 몰카’ 사건” 2020.10.08. 기사, <www.join.com> 2020.11.01. 검색)
- 8) 서울 여의도 KBS본사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 발견으로 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 즉 출입의 대상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촬영은 불법촬영 이외에도 동료 간의 서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성범죄 뿐 아니라, 업무상 효율성을 하락시킨다고 할 수 있다(미디어 오늘,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 몰카사건’ 2020.05.31. 기사, <www.mediatoday.co.kr> 2020.11.01. 검색).
- 9) ‘故구하라 폭행·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연인이었던 최OO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연인간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한국사회 전반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스포츠서울,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OO, 징역 1년 실행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리벤지 포르노’에 관한 경각심 목소리 ↑” 2020.10.15. 기사, <www.sportsseoul.com> 2020.11.01 검색). 본 사건과 관련하여 소견은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연인 사이의 동의에 의해 성관계 영상물 촬영은 불법이 아니지만, 비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은 촬영자체가 불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사생활 자유에 관한 침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은 동의 없이 유포, 삭제요청에 불응한 소지의 경우에도 제재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10) 일명 ‘박사방’이라 불렀던 n번방 사건은 2018년~2020년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영상물을 촬영·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자에는 성인 여성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유료회원을 중심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동아일보, “박사방” 피해자 최소 74명...16명이 미성년자. 2020.03.21. 기사, <http://www.donga.com> 2020.10.05. 검색).

촬영 대상 피해자의 범위에 따른 분류는 가장 기초적인 분류로서 유형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불법촬영물의 유형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의 책정과 법률적 해석이 제재를 가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고통과 잠재적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에 비해 걱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칭되어 사용하는 ‘불법촬영물’에 관한 유형을 촬영의 대상 및 촬영의 위험수위로 세분화하여 수사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불법촬영물에 관한 위험성

촬영행위의 불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촬영은 피해당사자의 인지(認知) 여부를 떠나, 해당 당사자에게는 충격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게 한다. 이러한 피해를 언론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안감 또한 피해자학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피해 이외의 간접적 피해라 할 수 있다.¹¹⁾ 대체로 불법촬영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불특정 소수인, 특정 다수인, 특정 소수인을 불문하고 촬영대상자의 미인지(未認知)나 몰인식(沒認識)이라는 측면에서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처벌법」상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촬영도구가 활용¹²⁾되는 탓에 피해의 인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절에서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불법촬영물에 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암수범죄 및 낙인에 의한 위험성

불법촬영과 유포, 소지와 시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촬영도구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11) 김용준, 「범죄피해자학」, 백산출판사, 2009, 28-30면; 허경미, 「피해자학」, 박영사, 2011, 20-22면 참조.

12) 다양하게 변형된 카메라에 따른 불법촬영은 외관상 카메라로 인식하기 어렵고 기술력의 발달로 위장형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인식의 어려움이 많다. 변형된 카메라는 그 종류가 160가지가 넘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일상생활용품의 형태로 만들어진, 자동차 열쇠형, 안경형, 단추형, 리모콘 형, 스위치형, 모자형, 벨트형, 헤드폰형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범죄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피해자들의 인식은 어려운 현실이다(박지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5(1),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2019, 79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¹³⁾

또한 다양한 형태의 촬영도구 사용과 불특정 다수인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에는 다수인의 신원확인이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특정 및 범인검거 가능성도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 밖에도 동의에 의한 성적촬영물이, 이후 동의 없이 유포된다거나, 비동의 성적촬영물—즉 특정 소수인의 철저한 개인사생활 영상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는 사건도 있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물이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삭제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사실 앞에서 피해자들은 모멸감, 분노, 무형(無形)의 공포,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오명 등과 같은 낙인에 의한 위협성에 고스란히 노출된다.¹⁵⁾

(2) 불법촬영물의 유포에 따른 위험성

일반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성범죄의 일종이다.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 익명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시·공간의 무제한성의 특징을 갖는다.¹⁶⁾ 또한 유포의 다양성과 복잡한 경로 탓에 공급자와 수요자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 불법영상물의 시청(視聽)과 그 관련 자료 전송 받기(download) 및 소지의 방식의 간편성으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점, 그리고 한번 확산된 영상을 쉽게 삭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불법에 따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 불법촬영·유포와 소지·시청의 공범에 따른 위험성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1항을 통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과 2항에서는 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및

13) 암수범죄의 유형 중 피해자 미인지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6, 64-67면; 김용준, 「형사정책학」, 백산출판사, 2011, 38-39면. 참조.

14)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 특징에 따른 암수범죄의 위험성에 대하여, 안영규, 위의 논문, 64면 참조.

15) 서승희,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방안—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9(3),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67-68면.

16) 김현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9(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10면 참조; 안영규, 위의 논문, 64면.

촬영에 대한 동의 후, 비동의에 의한 유포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항에서는 1항과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시청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불법영상물을 촬영·유포하는 자는 불법촬영물의 제공자라 할 수 있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및 구입·저장하는 자는 제공하는 자뿐 아니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는 서로 같은 목적, 즉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공통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로서 필요적 공범에서 대항범의 성격을 갖는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범의 경우에는 단일범죄에 비해 위험성이 높고, 인터넷 활용이라는 전파성과 삭제의 어려움으로 피해 확산의 높은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Ⅲ. 외국의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에 관한 규정과 비교

1. 외국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에 관한 범죄와 처벌

본 연구의 범위를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에 한정하여 위험성을 중심으로 외국의 범죄유형의 해석과 처벌규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OECD는 IT기술의 발달로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악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입법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⁷⁾ 우리나라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4항 규정에서 시청과 관련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마련하였다. 외국의 불법촬영물에 관한 법제현황은 일련의 관음증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2004년 「영상물 관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프라

17)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질원칙, 목적명확화원칙, 사용제한원칙, 안전성확보원칙, 공개성원칙, 개인참가원칙, 책임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디지털환경에 맞는 권고하여 각 국가와 전문가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Privacy Framework, OECD, 2013; 박지혜, 위의 논문, 82면 재인용).

이바시권 침해와 보호에 대한 논의 속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불법 촬영 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¹⁸⁾ 본 법은 개인의 신체 중 성적 관심을 끌기 쉬우며,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갖는 부분이라 명시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중에서 성적 불법촬영물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물 관음’에 대하여 미연방 법률은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과 자유형을 병과하고 있다.¹⁹⁾

(2) 영국

영국은 관음증을 세분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성범죄법」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사적인 행동을 하는 타인을 관찰하는 자는 타인이 자신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 내지 개조하는 자에 대하여 2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과 자유형을 병과(併科)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²⁰⁾

(3) 독일

독일형법은 제201조a를 통해 사진촬영을 통한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에 대한 침해라는 범죄를 규정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촬영과 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²¹⁾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및 개인의 성행위에 관한 불법촬영을 중심으로 성적인 요소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반포, 취

18) 박희영,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법제연구」 제31호, 한국법제연구원, 2006, 280-281면; 배상균, 위의 논문, 208면).

19) 김현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45-50면 참조.

20) 박지혜, 위의 논문, 83면 참조; 배상균, 위의 논문, 210-211면 참조.

21) StGB § 201a Verletzung des höchstpersönlichen Lebensbereichs durch Bildaufnahmen(법무부, 「독일형법」, 2008, 158면).

득 및 소유에 관하여, 독일은 제184조b를 통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는 반포행위, 전시, 게시, 상형, 기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인도, 제조, 보관,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한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내지 조직된 조직원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고 아동음란물이 실제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있다.²²⁾

(4) 프랑스

프랑스 형법은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에 대한 규정에서 사생활 침해 중 불법영상물에 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제226-1과 제226-2을 중심으로 타인의 사생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1년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당사자 승낙을 받지 않고 사적이거나 비밀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녹음, 기록, 전파 행위 및 당사자의 승낙 없이 촬영, 녹음, 전파하는 행위를, 고의로 사생활의 은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²³⁾ 또한 성착취영상물 녹화와 배포에 관련하여서는 제222-33-3조를 중심으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성착취영상물 녹화의 경우에는 각 해당범죄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²⁴⁾

대체로 ‘관음증’에 대한 제재를 설명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에서 명시하는 촬영, 유포, 소지, 시청과 함께 비교 분석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생활의 침해에 있어, 성적 사생활에 관한 불법적인 침해라는 맥락에서는 현행법의 내용과 함께 단계별 제재 구조를 논의하는데 외국의 입법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2) 법무부, 「독일 형법」 위의 책, 152면.

23) 법무부, 「프랑스 형법」, 2008, 161-162면.

24) 법무부, 「프랑스 형법」, 위의 책, 119-123면.

2. 우리나라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에 관한 신설규정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관련된 사건, 성착취 영상물 촬영과 유포에 따른 ‘n번방 사건’의 피해 등 최근 몇 년에 걸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공분을 불러왔다. 이러한 행태의 범죄는 대체로 피해대상자가 특정 소수인 이라는 것과 흉포한 성범죄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강력범죄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한 행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체의 특정부위를 촬영하여 공유하는 불법촬영과 유포, 시청과 소지라는 형태의 범죄유형이 활기를 띠면서 피해가 대량으로 속출하는 추세이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제재 규정과 제재가 필요한 영역을 확대하여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판매·임대·제공·유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상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실무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피해유형의 대상 분류 내지 제재 영역의 단계별 세분화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대상에 따른 처벌 중 불특정 다수인의 경우, 피해자 특징이 어려워 성범죄처벌법을 통해 강력처벌이 쉽지 않고, 대상이 특정된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처벌수위가 낮아지거나 초범 내지 과거의 전력이 있다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가벼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상충된다.²⁵⁾ 현행법과 신설된 규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25) 동거연인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협박에 폭행까지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협박 및 폭행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진 등을 7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과거 기소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 받게 있다고 하여 본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하여도 동종의 전력이 없다 하여 양형이 책정되었다. (파이낸셜뉴스, ‘동거연인 불법촬영에 협박·폭행 까지,,,징역 1년2월’, 2020.11.06. 기사, <www.fnnews.com>. 2020.11.06. 검색)

IV. 신설규정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 분석

최근 2020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제재하는 범위 안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일체의 촬영 및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을 처벌하는 기존의 규정과 더불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법촬영·유포와 소지·시청 행위의 관계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불법영상물의 촬영과 복제, 이후 재복제의 반복은 무작위·무제한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따른 잠재적 가해(加害)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입의 간편함과 구입경로 파악의 어려움, 소지·저장 과정과 방식의 다양성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추적과 삭제, 압수가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조에서는 불법촬영물에 관해, 불법적으로 신체를 촬영하여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사적인 성(性)생활의 영역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조는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신설 규정의 실효성을 위한 노력이 실무상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현행 법규에 따른 실무상의 대책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에 관해, 현행사법체제에서는 제재규정과 제재영역·범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법 규정을 개정·신설하고 있다.

예컨대,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의 신설처럼 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실상 낮은 선고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제시한다하여도 외국에 비

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現) 법의 실정이다.²⁶⁾ 현재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형종(刑種) 및 형량(刑量)의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세분화된 불법촬영물에 관한 양형의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위협과 피해를 고려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실효성을 위한 제재 장치와 운영

우리나라 수사체제는 모든 범죄에 대해 범죄유형과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이를 수사·의료·법률지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피해자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데이트 폭력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제재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피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112 신고시스템에 ‘스토킹 코드’를 생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²⁸⁾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과 같이, 불법촬영물에 따른 범죄사건의 제재 규정 또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따른 빠른 전파성 및 시공간의 확대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사체계의 일원화(一元化)와 디지털 전문 전담 수사팀의 구조적 연계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IT영역과 수사 영역의 공조 내지 전담반 설치를 통해 피해영상물의 추적, 조사와 삭제, 수사와 제재에 이르기 까지 원라인 시스템(One Line System)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유포자 외에 제공받는 자를 추적·차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2)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피해 촬영물 삭제와 관련한 대책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얼마만큼 전파되었는지 파악하기 쉽

26) 박철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과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4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94-95면.

27) 양형위원회, 시행 중 양형기준 참조(www.scourt.go.kr, 2020.11.01. 방문 검색)

28) 박현정, “데이트 폭력의 특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207면.

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이미 수습이 어렵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유포된 영상물의 피해당사자에게는, 불법적으로 촬영된 1차적 피해와 무분별한 유포 및 확산에 따른 2차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리적·정신적인 피해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으로 인해 3차 이상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농후해진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무엇보다 피해촬영물의 삭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 촬영·유포된 영상물의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²⁹⁾ 그러므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영상물 삭제를 개인 업체에 사후처리를 맡기기보다는, 범죄사건이므로 불법촬영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영역이 수사기관에 일임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상의 전면 삭제 비용은 그 막대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독자적 담당기관을 설치하여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의 선지급(先支給)과 후(後) 피고인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근거제도 마련은 응당 앞서 이뤄져야 할 당연한 조치이다.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최근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법적·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한 정책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연구들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관련하여 피해자 중심이 아닌 일부 가해자 중심, 즉 제재에 관한 규정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불법촬영 및 유포에 관한 범죄는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불법촬영 및 유포와 제공받는 자(소지 및 시청)의 공범성을 인정하여 형사적 제재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민사상 피해보상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형사피해자를 위한 구제·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전담반과 같

29) 김숙희·김영미·김현아·서승희·장윤정,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 삭제와 처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0(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49면; 김연수·정준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동아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8, 396면.

이 원라인 시스템(One Line System)의 디지털 성폭력범죄 전담반을 별도 운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성관련(성희롱, 추행, 성범죄, 성착취, 리벤지 포르노 모두포함) 불법 촬영·유포와 소지·시청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 전파성이라는 특수한 위험요소로 인해 피해자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잔인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³⁰⁾

앞서 논의했던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소지·시청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표준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불법촬영물에 관한 제재는 단순히 수사기관만의 몫이라고 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의료·법률지원 및 피해자 상담관리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는 피해의 파급이 더 크기 때문에 구조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피해 대상의 분류와 위험성에 따른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여성인권 진흥원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발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수사·법률, 의료 등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체제를 마련하고 있다.³¹⁾ 이에 신설된 규정인 소지와 시청에 관하여 지원의 범위를 넓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0) 전윤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19(3),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36면 참조.

31)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본 센터는 피해 촬영물의 삭제방법을 비롯하여 전문적·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수사 지원 연계의 경우, 채증필요 시 채증 자료 수집 및 정리, 수사 지원연계, 추가 증거제출 및 수사과정 모니터링 중심 피해자 지원, ② 삭제지원의 경우 유통 플랫폼별 피해자료삭제요청, 삭제지원·모니터링리포트 제공, 불법유통플랫폼 감시, ③ 기타 의료지원 및 심리치유,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무료법률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https://d4u.stop.or.kr>)

《참 고 문 헌》

- 김용준, 「형사정책학」, 백산출판사, 2011
- _____, 「범죄피해자학」, 백산출판사, 2009
- 김혜정·박미숙·안경옥·원혜옥·이인영, 「형법총론 제3판」, 정독, 2020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6
- _____, 「형법총론 제11판」, 홍문사, 2013
- 이상돈,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제10판」, 박영사, 2019
- 허경미, 「피해자학」, 박영사, 2011
- 김연수·정준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동아법학연구」 제 11권 제3호, 2018
- 김숙희·김영미·김현아·서승희·장운정,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 삭제와 처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와젠더법학」 10(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 김 희,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16집 제2호, 2016
- 김현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와젠더법학」 9(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 _____,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박지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5(1),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2019
- 박철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과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4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사전예방으로써 ‘클리어법’ 도입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 _____, “데이트 폭력의 특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 박희영,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법제연구』 제31호, 한국법제연구원, 2006
-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서승희,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방안-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9(3),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 안영규, “불법촬영 관련 입법적 제언을 위한 질적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9
- 이은영,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 전윤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19(3),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Privacy Framework, OECD, 2013
- 新村出(編), 『廣辭苑(第六版)』, 岩波書店, 2008年
- 법무부, 『독일 형법』, 2008
- 법무부, 『프랑스 형법』, 2008
- 동아일보, “‘박사방’ 피해자 최소 74명...16명이 미성년자”. 2020.03.21. 기사, <<http://www.donga.com>> 2020.10.05. 검색
- 미디어 오늘,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 몰카사건’ 2020.05.31. 기사, <www.mediatoday.co.kr> 2020.11.01. 검색
- 스포츠서울,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OO, 징역 1년 실행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리벤지 포르노‘에 관한 경각심 목소리 ↑” 2020.10.15. 기사, <www.sportsseoul.com> 2020.11.01. 검색
- 중앙일보, “아파트 노리는 ‘드론 몰카’ 사건” 2020.10.08. 기사, <www.joins.com> 2020.11.01. 검색
- 파이낸셜뉴스, ‘치맛속 몰카’ 2020.08.21. 기사, <www.fnnews.com> 2020.10.10 검색
- 파이낸셜뉴스, ‘동거 연인 불법촬영에 협박·폭행 까지,,, 징역 1년2월’, 2020.11.06. 기사, <www.fnnews.com>. 2020.11.06. 검색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Penalty Regulations on Possession and Viewing of the Illegal Filming*

- Focusing on Article 14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

Park, Hyun-Jeong**

In the case of illegal filming of sexual crimes, it makes the victims are not allowed to live their work, daily, and social lives in pain that is difficult to recover, as is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that occur in reality. Moreover, there is a high risk that illegally photographed videos are created and distributed online contrary to their intentions, and the damage will spread rapidly due to anonymity and rapid propagation.

Focusing on the so-called 'Nth Room' the existing penalties for illegal filming and distribution of sexual exploitation videos, and penalties for possession and viewing of illegal filming were newly established, and by expanding the subject and scope of punishment for digital sexual crimes, the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tect victims.

However, in the case of digital sexual crimes, there are many hidden and various types of crimes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 and scope of sanctions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ose of foreign countries. In this respect, focusing on foreign legislation, a detailed interpret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14 (Taking Photographs by Using Cameras) should be mad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B5A07093135)

** Chosun University College of Law, Ph.D.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dangers of accomplice regarding illegal photography and indiscriminate circulation of sexual crimes, also possessions and viewing these illegal filming, the basis for reasonable sanctions regulations should be provided. Through this, measures to eradicate illegal filming of sexual crimes and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victims should be prepared together.

Key Words

Digital Sexual Offences, Crime of taking photos by using cameras, Possession of illegal photographs, Watching illegal photographs, Unlawful Capture of Picture.